

##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4차 모집 공고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4차)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중소기업청장

###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모집규모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예정인원*	신청자격
수시발굴연계 (4차)	내국인	65명 내외	- 예비창업자 -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외국인	10명 내외	- 거소증 소지자 - 또는 장기체류자격(비재) 취득자

\* 대상별 지원예정인원을 우선 선발하나, 신청인원 부족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통합하여 선정

**※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의무)**

- ① 한국어로 문서작성이 가능하여야 함
- ② 외국인 중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팀(외국인 1인+내국인 1인)으로 신청, 협약종료 3개월 전 팀원(내국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 \*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
- ③ 외국인 중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는 본인명의 사업자를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천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 [붙임 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분야로 신청가능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붙임 2.]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지원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최종 선정자 본인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세부사항은 창업넷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 →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소개자료 참조

## 2 신청 및 선정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
  - 본 사업의 신청기회는 연간 단 1회로, 이전 공고에 신청하여 탈락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단계 >

①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 ④ 체크리스트(자가진단 및 창업적성검사)작성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⑦ 제출

### □ 신청자격

#### ○ 내국인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검직허가서) 제출 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 외국인

- **(거소증 소지자)**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출장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한함

- **(장기체류자격(비자) 취득자)** : 신청일 현재 장기체류자격(비자)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2년 이상으로 연장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출장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한함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 3) 참조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12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본 사업의 최종선정 공고 직후 기수행 중인 지원사업의 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상기 (예비)창업자가 본 사업에 최종선정 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 4) 참조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1차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유사직종 재직경험, 지식재산권 확보, 창업관련 교육 이수, 네트워크 보유 등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
2차 (멘토링 및 발표평가)	멘토링 캠프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교육 참여의 적극성, 사업화 추진의지, 의사소통 능력, 네트워크 및 대인관계 형성 능력, 창업 비전제시, 문제인지 및 해결능력(위기관리능력) 등
	발표평가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경쟁사의 모방가능성(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적 차별성(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 예상 시장수요조사 결과, 창업계획, 생산계획, 홍보 및 판매전략,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등

- (1차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성,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의 서류평가 실시
- (2차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및 발표평가 실시
  - \* 진행절차 : 멘토링캠프(2주 이내)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5일) → 발표평가
  - (멘토링캠프) 창업자의 인성·의지·역량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에 대한 캠프형 평가 실시
  - \* 2주 이내 과정으로 집체교육 및 실습 등으로 구성, 세부 운영계획은 서류평가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신청자 본인참석 필수이며 대리참석 불가)
  - (발표평가) 멘토링캠프를 통하여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용 보완 후 발표평가 실시
  - \* 멘토링캠프 종료 후 5일간 발표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최종선정) 2차평가(멘토링캠프, 발표평가) 합산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순으로 75개 내외 선정



**< 평가 절차별 선정 인원 >**



**□ 가점사항**

-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 본선 입상자에 한함
  - ☞ 여성
  - ☞ 장애인
  -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 단, '13.3.15. 이전 수료한 자에 한하며, 수료예정자는 가점 불인정
-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4점)하여 서류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3.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창업넷 공지사항 게시)

#### 4. 유의사항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붙임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
- '13년도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이미 선정된 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시,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 5.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042)480-4342~8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042)480-4373

【붙임 1.】

## 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

□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콘텐츠 창작 기획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ITS/텔레매틱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수요예측·관리 기술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신원전 기술			
전기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바이오·의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관독시스템					
		한 의 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의료정보표준화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붙임 2.】

**「창업맞춤형사업」  
비 목 별 계 상 기 준**

비 목	계 상 기 준
창업자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건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월 12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70만원</li> <li>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20만원,        박사 : 월 270만원</li> </ul> </li> </ul> </li> <li>· [별표4호]의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li> </ul> </li> <li>- <b>외주용역비</b> :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li> <li>- <b>재료비</b>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li> <li>- <b>기자재 구입비</b>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li> <li>- <b>기자재 임차료</b>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li> <li>- <b>기술이전비</b> :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li> </ul> </li> <li>• <b>기술정보활동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li> <li>-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의 소요비용</li> </ul> </li> <li>• <b>마케팅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물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물 제작비</li> </ul> </li> </ul>

【붙임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09년 ~ '12년(지원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 상기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이거나 수행완료한 자는 본 사업에 참여불가

**'13년(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청년창업자),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붙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잼블링 및 베탱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참조